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5821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 서울 서초구 B 대 394㎡ 및 위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피고에게 취득가액 6,080,000,000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160,000원, 지방교육세 24,320,000원 합계 279,68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영업주들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객실 32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등에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지 목록과 같이 원고에게 ① 2015. 2. 10. 취득세 486,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8,640,000원, 가산세 133,395,200원 합계 668,435,200원을 부과 · 고지하고, ② 2015. 6. 10. 2014년도 수시분 재산세(건축물) 13,341,32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90,620원, 지역자원시설세 483,750원, 지방교육세 2,668,260원 합계 16,583,950원과 2014년도 수시분 재산세(토지) 120,147,030원, 지방교육세 24,029,410원 합계 144,175,44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호증, 을 제1, 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별개의 테마로 인테리어를 한 후 분양할 예정이었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때문에 각 층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경기악화로 분양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3층에서만 원고의 처 C의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묵인하였다. 그 외에 지하 1층에는 비품이 쌓여 있어 창고로 사용되었고, 4층은 직원들이 밥을 먹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5층에는 주방과 직원 대기실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C은 남녀가 함께 온 손님은 2층으로 안내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유흥접객원을 원하는 손님은 3층으로 안내하여 영업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만 유흥주점영업으로 인한 중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서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영업주 D, 4, 5층 영업주 E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3층 영업주 F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2층의 실제 영업주 C과 총지배인 G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루어진 정식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범위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에서 "2층, 3층"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그에 관하여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적어도 2층, 3층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중과세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이 분명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하1층 H(주)(일반음식점, 영업주: D), 지상2층 I(주) 서초점(일반음식점, 영업주: C), 지상3층 J(주)(일반음식점, 영업주 F), 지상4, 5층 K(일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음식점, 영업주: E)로 각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가 이루어졌다. D은 원고의 아버지, F은 원고의 어머니, C은 원고의 처, E은 원고의 누나이다.

2)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14. 5. 29. 이 사건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서자, 1층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경찰관 일행에게 지명 여종업원이 있는지 묻고, 없다고 하자 2층에 있는 다다미방으로 일행을 안내한 후 여종업원이 들어와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그 때 경찰관들이 3층으로 올라가 각 방의 문을 열어보았을 때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 옆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고 있었다.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4. 10. 7.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 및 보건위생과의 단속통보 내용과 같이 전체 층이 5층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1명의 관리인이 지하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체층을 관리 안내하고 있으며, 사장님으로 안내해준 전화번호는 건물주인 원고로서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지상5층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지상1층이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대장상 주차장 및 계단실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사방의 벽이 설치되어 있고 객실 및 테이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이 사건 건물의 각 영업주들은 가족관계로서 1층의 카운터 및 5층의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종업원들을 공동으로 고용·관리하면서 종업원들의 월급정산 서류 등을 통합 관리하며, 3층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1층 카운터에서 5개 일반음식점의 각 신용카드 단말기로 골고루 배분하여 결제하고, 1층 카운터 포스에서 총괄하여 매출을 집계하였음.
○ 사업장 면적 962.39㎡, 객실 32개(지하1층 3개, 1층 2개, 2층 9개, 3층 9개, 4층 9개), 유흥접객원 10여명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당시 카운터에 있는 포스의 일별 판매현황에 기록된 매출총계는 2013년 1월 252,362,000원, 2013년 2월 272,575,000원, 2013년 3월 303,711,000원, 2013년 4월 316,686,000원, 2013년 5월 300,681,000원, 2013년 6월 291,120,000원, 2013년 7월 328,106,000원, 2013년 8월 281,275,000원, 2013년 9월 220,949,000원, 2013년 10월 272,128,000원, 2013년 11월 30,060,000원, 2013년 12월 271,525,000원, 2014년 1월 189,589,000원, 2014년 2월 187,630,000, 2014년 3월 258,927,000원, 2014년 4월 264,694,000원, 2014년 5월 222,850,000원, 2014년 6월 224,599,000원, 2014년 7월 20,246,000원이었다.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진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결제는 1층 카운터에서 각 층별 사업장 명의로 고르게 결제되었고, 유흥접객원들에 여종업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도 각 층별 사업장에서 골고루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건물의 영업장 전체를 관리한 총 지배인 G은 2014. 7. 3. 경찰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3층에서만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남녀손님이나 여종업원을 찾지 않는 손님은 2층으로 안내하였으며, 손님들이 지하1층이나 4층에 있는 룸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고, 지하1층과 1층, 4층의 룸을 폐쇄하지 않고 다른 층처럼 테이블 세팅을 해놓은 이유는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장으로는 C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L bar에서 일하면서 월 수입이 300만 원이다.
○ L bar의 사장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이며 연락처는 M이다. 가끔 연락을 해서 매출을 물어보는 정도이고 만나는 것은 현금매출을 준다거나 급여정산표를 만들어서 줄 때만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 제가 카운터 관리, 직원 관리, 급여정산표 작성 등 전반적인 총 관리를 하는데, L bar의 면적 및 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지하1층에는 룸이 3개 있고, 화장실, 창고가 있고, 지상1층에는 룸 2개와 화장실이 있고, 지상2층에는 룸 9개와 화장실이 있고, 지상3층에는 룸 9개와 화장실이 있고, 지상4층에는 룸 9개와 화장실이 있고, 지상5층에는 주방과 여종업원 대기실이 있다. 1층, 3층, 5층을 거의 사용하고 다른 곳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서빙일을 하는 남자직원이 3명 있으며, 여자직원은 25명정도 있다. 여자직원 전체 25명 중, 하루에 출근하는 것은 많게는 18명에서 적게는 16명이 출근하고 있다.

○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룸이 32개가 있는데, 룸이 많기는 하지만 룸이 찰 만큼 손님이 많지 않아 현재는 지상3층을 주로 영업을 하고, 2층은 남녀 손님이 오는 경우에 2층으로 안내를 한다.

○ 현재는 지상3층만 사용을 하고, 카운터에 5개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골고루 나누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이유는 모르는데 여자사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였고, 제가 카운터에 설치된 포스를 관리한다.

6) E, C과 원고는 경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E의 2014. 7.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일반음식점을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나 영업은 전부 G이 하고 경리적인 문제나 총괄 운영은 C이 한다.

○ 동생인 원고가 사업을 해서 월 1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2억 원 대출을 받아서 원고에게 주고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다. 본인은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 **C의 2014. 7.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이 사건 건물 2층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은 남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각 층마다 BAR 센터로 분양하기 위하여 2층을 저의 명의로 하게 된 것이다. 경리관계는 G에게 받은 자료로 제가 정리를 해서 각 사업자로 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정산해 주고 있으나 영업에 대한 것은 G에게 위임해서 아는 바가 없다.

○ 이 사건 건물의 5개 일반음식점 대표자들이 서로 가족이 맞고, 1층 한 개의 카운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및 5층의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종업원들을 공동으로 고용, 관리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2층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1층 카운터에서 5개 일반음식점의 각 신용카드 단말기로 배분하여 결제하는 것을 알고 있다. ■ **원고의 2014. 7. 28.자 경찰 진술조서** ○ L bar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를 실질적으로 G이 운영하여 사업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보고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다. 정산은 처 C이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과는 별개로 골고루 배분하여 정산한다. ○ 본건 L bar가 4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업소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가족들이 사업자로 되어 있다 보니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7) 2014.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형제87180호로 F, E,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피의자들이 가족인 C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C에 대하여 공소제기하는 점, C이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핵심 역할을 한 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D, E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심리회부결정이 이루어지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추가조사를 거쳐 2015. 10. 28. D,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피의자들과 가족관계인 원고 소유로서, 건물 전체에 L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나온 수익금이 피의자들 명의의 상호로 계산되었고, E의 계좌에 수익금 일부가 입출금된 점에서 피의자들이 C, F, G과 공모하여 피의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피의자 D은 당시 알츠하이머병이 심하였고, 피의자 E은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통화내역상 피의자들이 범행지 인근을 왕래한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흥주점 영업에 가담하거나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8) C과 G에 대하여 2014. 12. 18. 선고된 2014고정4882 식품위생법위반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았는데,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0. 선고 2015노179)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아래의 범죄사실 3~4행 중 "지하 1층 163.50㎡", "4층 186.00㎡, 5층 75.29㎡" 부분이 삭제되었고, 영업장소가 이 사건 건물 2, 3층으로 축소된 유죄판결(C 벌금 300만 원, G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C은 [redacted]구 B 5층 건물에 있는 'LBAR' 일반음식점의 공동운영자 중 1명이고, 피고인 G은 총지배인이다.
>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경부터 2014. 5. 29. 22:00까지 위 건물에서 지하 1층 163.50㎡, 2층 177.00㎡, 3층 177.00㎡, 4층 186.00㎡, 5층 75.29㎡의 공간에 각 층마다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는 다다미방 등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종업원 N(예명: O) 등 17명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9) 이 사건 건물은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남아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에는 온돌방인지 테이블석인지와 인테리어가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운데에 커다란 상이나 테이블이 있고 입구 쪽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손님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비슷한 구조의 객실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현장조사 당시 지하1층과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 룸 모두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술잔 등이 세팅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5층에는 유흥접객원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물함과 옷걸이 및 탈의시설이 설치되어 유흥접객원들의 대기실로 이용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16호증,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18호증 내지 제22호증, 제24호증 내지 제2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을 무렵부터 계속하여 건물 전체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층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등록된 각 사업자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가족들로서 원고의 처 C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대여 혹은 자금대여나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고, 매출금액과 유흥접객원의 급여 지급내역 등을 각 층별로 등록된 사업장에 고르게 분배하여 결제 및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고하였다. 즉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은 C 및 G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관리 · 운영되었다.

②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및 주방으로 이용된 이 사건 건물의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1층부터 지상4층에는 모두 외부와 차단되는 유사한 구조의 객실이 존재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층의 객실 테이블 위에도 술잔 등이 즉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건물의 구조적 · 기능적 용도 및 사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 단속 당시 실제로 손님이 이용하고 있던 2층과 3층 외에 나머지 지하 1층, 1층, 4층의 객실 역시 일시적인 고객의 감소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 향후 언제든지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고, 구조변경 등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원고가 이 부분을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적도 없다. 또한 1층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동 출입구이자 안내 및 대금결제를 위한 카운터로 이용되었고, 5층은 각 층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만드는 공동 주방 및 유흥접객원들의 대기실 겸 탈의실로 기능하였으므로, 위 부분 역시 유흥주점영업장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C, G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장소가 이 사건 건물의 2, 3층으로 감축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어야 하므로, 유흥주점영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된 식당이나 대기실 및 예비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였던 객실이 있는 층은 제외하고 유흥주점영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에 있어서 중과세를 하는 취지는 사치 · 향락적 소비시설의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통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분양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고, 앞서 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명의자, 건물의 구조 및 객실의 배치에 비추어 볼 때 층별로 별개의 일반음식점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층마다 다른 콘셉트(concept)의 인테리어는 하나의 영업장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4층의 객실이 이용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대원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목 록

처분일자	세목	세액(원)
2015. 2. 10.	취득세	486,400,000
	농어촌특별세	48,640,000
	가산세	133,395,200
2015. 6. 10.	2014년도 수시분 재산세(토지)	144,176,440
	2014년도 수시분 재산세(건축물)	16,583,9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4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끝>